

가정법원 의 면접 교섭 사건 절차



면접교섭이란 ?

별거 중이거나 이혼 후에 떨어져 사는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계속적으로 교류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의 절차를 이용하여 면접교섭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서는 면접교섭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협의할 때 부모가 유의해야 할 것과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사건 절차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면접교섭에 대해 협의하시는 분께

아이에게 면접교섭이란?

부부가 떨어져 살게 되더라도 자녀가 양쪽 부모로부터 모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각각의 부모와 따뜻하고 안정된 부모자녀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은 자녀의 성장에 아주 중요합니다.

적절한 형태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면 아이는 양쪽 부모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며, 안심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유의해야 할 점

- 자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 아이가 놓인 상황이나 기분, 아이의 생활에 대한 영향을 상상하고, 아이에게 가장 바람직한 면접교섭의 방식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를 부모의 다툼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합니다.
 - ▶ 자녀로서 다른 한쪽 부모의 험담을 듣거나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듣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로서 다른 한쪽 부모와 협력하도록 합니다.
 - ▶ 부부 간의 일과 부모자녀의 일은 분리해서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생각을 상상하여 자녀의 부모로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신의 마음을 직시해 봅시다.
 - ▶ 다투고 있을 때는 평소와 달리 차분하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의 기회도 이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정리해 봅시다.



법원 웹사이트(동영상 제공)

<https://www.courts.go.jp/saiban/video/index.html>

이혼이나 면접교섭을 둘러싼 부모 간 갈등 속에서 아이가 받는 영향과 부모가 아이를 갈등에 휘말리게 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배려 등에 관하여 설명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裁判所 動画配信

검색

※음성 및 자막은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子どもにとって望ましい
話し合いとなるために~





면접 교섭 사건 절차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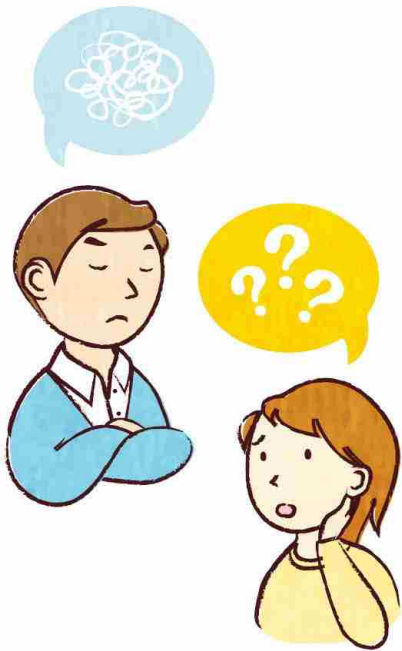


법원의 수속

별거 중 또는 이혼 후

- 아이와의 면접교섭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부모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다
- 아이의 생활상황 변화 등으로 이미 정한 면접교섭 방법을 변경하고 싶다

이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의 절차를 이용하여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 또는 어머니
- * 신청 장소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서 등의 지참 또는 우송

- * 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으로 조정에 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부부관계조정 중이라도 면접교섭에 대해 합의하거나 정할 수 있습니다.

- ▶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 웹사이트(면접교섭 조정)으로 (P 6)

조정

- 조정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사안에 따라 여러 차례의 기일을 설정합니다. 기일의 간격은 통상 1개월 정도입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단기간에 다음 기일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1회 기일은 원칙적으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입니다.
- * 원칙적으로 판사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진행합니다. 가정법원 조사관이 기일에 입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Q&A 로 (P 5)

조정 성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고 그 내용을 조정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 불성립·심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판단으로 조정은 불성립이 되고, 자동적으로 심판 수속으로 이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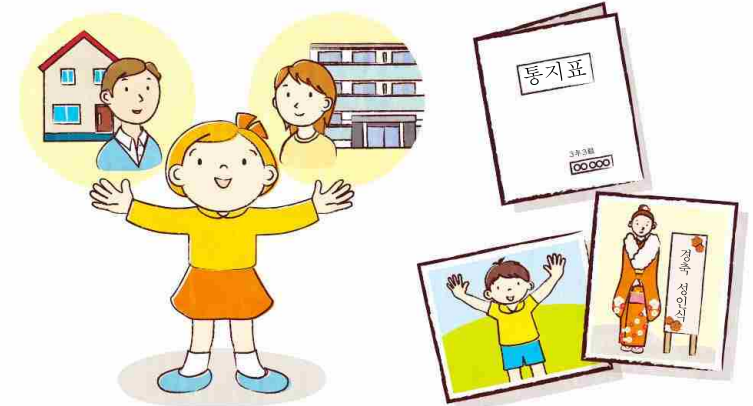
심판에서는 판사가 모든 사정을 바탕으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정법원 조사관에 의한 조사

- 판사의 판단으로 가정법원 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Q&A 로 (P 5)

- 조정조서 또는 심판으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 면접교섭을 진행합니다. 면접교섭 방법은 크게 다음 2가지입니다.

- * 직접 교류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는 면접교섭입니다. 빈도, 시간, 장소, 동반자 유무 등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 * 간접 교류 전화, 편지, 이메일,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한 면접교섭이나 아이와 함께 사는 부모로부터 떨어져 사는 부모에게 사진, 통지표 등을 보내는 면접교섭 등이 있습니다.
- 면접교섭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나 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 지원기관을 이용하기로 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 부모가 협력하여 아이를 인도하거나 연락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 면접교섭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이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면접교섭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알선할 수 없습니다. 이용조건이나 비용 등은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교섭 조정 Q&A



Q2 면접교섭 내용이나 방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A 면접교섭이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그 복지에 부합하도록 아이의 연령, 성격, 생활상황, 생활환경, 아이의 마음, 부모와 자녀의 그동안의 관계 등에 기초하여,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내용이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는 아이의 상황이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의 면접교섭에 대한 생각 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조언이나 제안을 합니다.

Q4 면접교섭의 내용이나 방법을 정한 뒤,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 권고 수속을 진행하거나 조정 등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정이 변경되는 등 조정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도 조정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다툼에 자녀를 자꾸 끌어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선은 당초의 조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조정의 자리에서는 어떤 사항을 논의하는가요?

A 떨어져 사는 부모와 아이가 면접교섭을 할지 여부나 면접교섭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 일시, 장소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아이의 이익을 고려해 협의합니다.

Q3 가정법원 조사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가정법원 조사관은 심리학 등 행동과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조사와 조정을 합니다. 면접교섭을 할지 여부를 포함해 아이에게 더 바람직한 면접교섭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와 면담하여 그 생각을 듣고, 이를 조정위원회나 부모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 내에서 시험적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 웹사이트(면회 교류 조정)

https://www.courts.go.jp/saiban/syurui/syurui_kazi/kazi_07_08/index.html

면접교섭 조정 절차 안내와 신청서 및 작성 예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裁判所 親子交流

검색



일본사법지원센터 법 테라스 안내 법적 문제로 고민될 때는

0570-078374

<https://www.houterasu.or.jp>

法テラス

검색



법무성 웹사이트

<https://www.moj.go.jp/>

면접교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法務省 親子交流

検索



MEMO

- 민법에서는 이혼 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아이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등에 대해 정할 때는 아이의 이익을 가장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 가사사건수속법에서는 조정이나 심판을 할 때 자녀의 복지(자녀의 의사 등)를 배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사사건수속법 제 65 조 외)

リサイクル適性 

この印刷物は、印刷用の紙へ
リサイクルできます。